

檢 討 報 告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소관

日 時 : 2009. 10 . 19 (월) 10:00

行政建設委員會

専門委員 명 금 길

[검토보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 동 조례안은 구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民間의 투자를 유도하고 적극 유치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많은 예산의 소요가 예상되는 사회기반시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함에 있어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하여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시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임

<주요내용>

- (1) 안 제2조에서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으로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정책의 수립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대상사업의 지정 및 취소,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
- (2) 안 제3조에서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6명을 제외한 위촉직에 대해서는 민간투자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위촉
- (3) 그 밖에 안 제5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위원의 임기 및 해촉, 회의소집 및 의결 절차, 간사의 임무, 안건 심의를 위한 의견청취, 위원회의 수당 지급 대상자의 범위 시행규칙 제정 등으로 구성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기능, 구성, 위.해촉, 위원장의 직무 회의, 의결, 청취방법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는 조례안으로서 상위법인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지방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 라는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항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는 규정에 따라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와 조례 시행의 타당성을 갖고 있음

또한 이 조례안이 대체적으로 제12개조로 간결하게 구성되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국한될 수밖에 없는 법리적 배경은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서도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등에서 기본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며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안 제12조에 명기되어 있어 앞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

무한경쟁의 국제화, 개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에 부족한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도 사회기반시설에 민간참여를 유도하여 구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미래 지향적인 안으로 판단되며 법령형식 및 자구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